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황명선 · 민병덕 · 염태영

김재원 • 윤종군 • 조정식

이정문 • 진선미 • 정을호

송재봉 · 한준호 · 이재관

이재강 · 장경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·고용불안·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,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.

그러나,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, 시행,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 제정이 필요함.

이에 「사회적경제기본법안」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

「국가재정법」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적경제기본법안」(의안 번호 제164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